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6조의 2) : “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”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기 타
1) 입법예고 : 예고한 날짜(특이 의견 없음)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6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